##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43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황 희·안규백·김병주

추미애 • 민병덕 • 정준호

정성호 · 한민수 · 김태년

이연희 • 박용갑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계엄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엄 해제요구 등을 위해 국회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주・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 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계엄 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 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장 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 시에도 국회 및 정당의 기능이 보장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신설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계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③ 대통령이 계엄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기 48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엄은 기한이 도 대한 때로부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고(通告)하여야 한다"를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회의 기능 보장 등)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입법 권은 보장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 활동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거주·이전"을 "수색"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	<u>⑥</u>
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	
회의의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u>심</u> 의·의결을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생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계엄 기간은 10일 이내로
	<u>한다.</u>
<u>&lt;신 설&gt;</u>	③ 대통령이 계엄 기간을 연장
	하려는 때에는 계엄이 종료되
	기 48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고
	(通告)하여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lt;신 설&gt;</u>	④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
	를 받지 않은 경우 계엄은 기
	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해제된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u>통고(通</u> 告)하여야 한다.

② (생 략)<신 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 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 포·구금(拘禁)·압수·<u>수색·</u> 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통고하여
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국회의 기능 보장 등)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
의 입법권은 보장되며 국회의
원과 정당의 정치 활동은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수색
<u>.</u>

② ~ ④ (현행과 같음)